

교직원포상규정

제정	1995.03.01	1차 개정	1998.09.01
2차 개정	1999.03.01	3차 개정	2009.03.01
4차 개정	2012.12.01	5차 개정	2014.08.08
6차 개정	2015.02.01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교직원(특별한 경우 교직원 이외의 자 포함)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, 학과 또는 부서 및 팀 단위로 적용할 수도 있다.

1. 장기근속상: 학교법인 우송학원(이하 “본 학원”이라 한다.)에서 만10년, 20년, 30년, 40년간 장기 근속하면서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2. 특별공로상: 재직기간 중 근면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하고 직장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공헌하거나 또는 특별한 공적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
3. 창안상: 창의적인 제안으로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
4. 감사장: 본 대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본 대학의 명예를 높여준 교직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
5. 정부 등의 표창: 정부 또는 외부단체에서 본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표창하고자 추천 의뢰하는 경우의 해당 자
6. 자랑스런우송인 : 교육, 연구, 봉사, 행정분야에서 대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

제3조(포상의 주체 및 방법) ①포상 종류별 포상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기근속상, 자랑스런우송인, 특별공로상 : 본 학원 이사장
2. 특별공로상, 창안상, 감사장 : 본 대학 총장
3. 정부 등의 표창 : 정부 등 표창 주관기관의 장

②포상의 방법은 상장 및 상패와 부상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하거나 그 중 한가지만 으로 할 수 있다.

제4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 ①포상대상자가 교직원은 총무처장이, 교직원 이외의 자는 관련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.

②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포상의 결정)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사항이 경미하거나 특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7조(선발기준) 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포상대상자의 공적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
2. 공적이 뚜렷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
3. 기타 포상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

제8조(포상의 시기) ①장기근속포상은 매년 개교기념일에 한다.

②자랑스런우송인, 특별공로상 및 창안포상과 감사포상은 정기 또는 공적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.

③정부 등의 표창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행한다.

제9조(주관부서) 교원 및 직원의 포상과 관련한 사무는 총무처에서 주관한다.

제10조(기타) 교직원 포상에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